

의안번호	제 59 호
의결 연월일	2022. 9. . (제 회)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	조성태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9월 7일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조성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9월 7일
발 의 자 : 조성태, 이상정, 김정일,
박봉순, 안지윤, 안치영,
김종필

1. 제안이유

- 「혈액관리법」에서 위임한 헌혈추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헌혈증진 및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, 혈액 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규정(안 제1조)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규정(안 제2조)
-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기능 신설(안 제4조)
-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)
- 위원회 임기 신설(안 제6조)
- 위원장 직무, 간사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~제8조)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(안 제2조, 안 제3조, 안 제10조제2항, 안 제12조)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및 규정 : 붙임
- 나. 조례안예고 :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2 - 53호
- 다. 협 의 : 보건정책과
- 라. 비용추계 : 붙임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른 충청북도 헌혈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 및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 ‘도지사’ ” 를 “ “도지사” ” 로, “도민” 을 “도민(이하 “도민” 이라 한다)” 으로 한다.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마다” 를 “매년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, “다음연도” 를 “다음 연도” 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,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2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

3. 헌혈 관련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
사가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
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

2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,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
계자

3. 보건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4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
수 있다. 다만,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
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
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
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

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간사)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제10조(중전의 제5조)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 으로,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” 를 “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 로 한다.

제12조(중전의 제7조) 중 “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” 를 “누설해서는 안된다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헌혈을 통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</u> <u>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혈액관리법</u>」 제4조의6에 따른 <u>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</u>과 <u>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충청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‘<u>도지사</u>’라 한다)는 <u>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장려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2조(충청북도지사의 책무) ----- ----- “<u>도지사</u>”----- <u>도민(이하 “도민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<u>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장려 사업계획(이하 “사업계획”이라 한다)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② 도지사는 <u>당해 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평가</u></p>	<p>제3조(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년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해당</u> ----- -----</p>

하고,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---- 다음 연도 -----

<신 설>

제4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 ① 도지사는 「혈액관리법」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

1.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
2.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
3. 헌혈 관련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헌혈 증진 및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

<신 설>

제5조(협의회 구성)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부

	<p><u>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<u>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</u> <u>2. 충청북도교육청, 충청북도경찰청, 의료기관,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관계자</u> <u>3. 보건의료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 <u>4.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</u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7조(위원장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</u></p> <p><u>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</u></p>

	<p><u>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<u>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
<신 설>	<p><u>제8조(간사)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u></p>
<u>제4조</u> (생략)	<u>제9조</u> (현행 제4조와 같음)
<p><u>제5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</u> (생략)</p> <p>②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, 지원방법, 지원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 및 「충청북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」에 따른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	<p><u>제10조(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) ①</u>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에 따른</u> ----- ----- <u>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</u>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<u>제6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 도지사</u>는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헌혈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</p>	<p><u>제11조(헌혈홍보 및 정보제공)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1. 3. (생략)	1. 3. (현행과 같음)
<p><u>제7조(비밀준수의 의무)</u> 이 조례에 따라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<u>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	<p><u>제12조(비밀준수의 의무)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누설해서는 안 된다.</u></p>
<p><u>제8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규칙으로 정한다.</u></p>	<p><u><삭제></u>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혈액관리법

제4조의6(헌혈추진협의회 구성)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·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18. 12. 11.]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및 혈액수급 부족 위기 대응 등 헌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·운영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등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4조(협의회 설치 및 기능)
- 조례안 제5조(협의회 구성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2022년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참석수당
- 산출내역

구분	합계	산출기초	비고
협의회 수당	2,600천원	- (참석수당) 13명×100천원×2회	당연직 제외

-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: 100천원
- 협의회 구성 : 15명 내외(당연직 : 보건정책국장, 보건정책과장)

나. 추 계 결 과 :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13,000천원 소요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	계
세 출	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협의회 수당	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재원 조달	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자 체 수 입	소 계	0	0	0	0	0	0
	지방세	2,600	2,600	2,600	2,600	2,600	13,000
	세외수입	0	0	0	0	0	0